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048 발의연월일: 2020. 8. 19.

발 의 자:서영석・인재근・문진석

김경협 · 김경만 · 박홍근

이정문 · 강선우 · 권칠승

박영순 • 민홍철 • 설 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, 성장과 발달, 상처치유 및 회복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이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에서 학교 박 청소년 지원사업에 관한 여성가족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, 업무의 위탁은 여성가족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적미비 상태로 지방 자체단체의 장도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 있음.

이에 학교 밖 지원센터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센터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와 비용지원을 연계하는 한편,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학교 밖 청소년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12조, 제12조의 2및 제18조).

법률 제 호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.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지원센터의 평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, 지원 등에 반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제2항 중 "여성가족부장관"을 "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개 정 안 했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 ① ~ ③ (생 략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----.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 른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 다. ⑤ (생략) ⑤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제12조의2(지원센터의 평가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 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.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, 지 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 다. 제18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제18조(권한의 위임과 위탁) ①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② 여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 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 또는

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	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
다.	구청장을 말한다)